## BK21 사업단(팀) 운영 규정

제정일: 2006. 12. 28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광운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산학협력단 정관제8조에 의하여 BK21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단 및 핵심사업팀(이하 "사업팀"이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업단(팀)의 구분) ① BK21 사업 추진을 위해 본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 사업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단 또는 사업팀을 둔다.
  - ② 사업유형 중 핵심사업분야를 제외한 사업분야는 사업단으로 하고 핵심사업분야는 사업팀으로 한다.
- 제3조(총괄책임) ①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위임을 받아 BK21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된다.
  - ② 사업단(팀)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위임을 받아 사업단(팀)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BK21 사업의 실무 책임자가 된다.
- 제4조(사업단(팀)장) ① 각 사업단(팀)에는 BK21 사업이 종료될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 및 책임감이 있는 인사로 사업단(팀)장 1인을 두며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다.
  - ② 사업단(팀)장은 사업단(팀)을 대표하며 사업단(팀)장의 사업단(팀)에 관한 권한은 최대한 존중된다
- 제5조(사업단(팀)장의 권한) ① 각 사업단(팀)의 사업단(팀)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.
  - 1. 사업단(팀)에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권한
  - 2. 대학 및 산업체 대응자금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
  - 3. 배정된 연구 예산에 대한 집행 권한
  - 4. 사업단(팀) 참여 구성원에 대한 수당 지급 권한
  - 5.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지급 권한
  - 6.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 추천 및 실질적 선임 권한
  - 7. BK21 사업단(팀)에 참여하는 겸임교수 또는 외부산업체 연구원의 대학 상주 요구 권한
  - ② 사업단장의 책임시수는 3시간으로 감면하여 시행한다.
  - ③ 사업단(팀)장의 기타 권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**제6조(구성)** ① 각 사업단(팀)은 소속 대학원 또는 학부의 교원, 계약교수, 박사후과정생 및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한다.
  - ② 각 사업단(팀)은 BK21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, 산학협력을 위한 산업체 연구인력 등을 두어 사업단(팀) 연구 성과를 극대화한다.
- 제7조(계약교수) ① 계약교수는 사업단(팀)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하고, 신규임용 후보자 선정, 임용절차, 면직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BK21 사업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.
  - ② 계약교수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  - ③ 계약교수는 각 사업단(팀)의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강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다.
- 제8조(박사후과정생) ① 박사후과정생은 사업단(팀)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.
  -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최대 계약기간은 2회 이내에서 각 사업단(팀)장이 별도로 정한다.
  - ③ 박사후과정생은 각 사업단(팀)의 연구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강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.

- 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(팀)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각 사업단(팀) 별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(팀)장, 산학협력단 BK21 지원담당자를 포함하여 소속 사업팀원 등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(팀)장이 된다.
  - ③ 운영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.
  -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회의 의결한다.
    - 1. 사업단(팀)의 연간 사업계획
    - 2. 계약교수 선정과 관련된 사항
    - 3. 박사후과정생 선발
    - 4. 대학원생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
    - 5. 평가내용 및 방식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
    - 6.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
    - 7. 산학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  - 8. 기타 사업단(팀) 운영에 필요한 사항
  -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0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BK21 사업의 자체평가 및 시행 성과에 대한 진단을 위해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  -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각 사업단(팀)별로 구성하되 사업단(팀)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- ③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사업단 및 교내인사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외 유관 인사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.
  -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조직, 위원 선임 및 자체평가 방법, 성과 진단, 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단(팀)별로 별도로 정한다.
- 제11조(BK21 지원팀) ① BK21 사업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 내에 BK21 지원팀을 둔다.
  - ② BK21 지원팀의 조직,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12조(사업비관리) 사업단(팀)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중앙 관리한다.
- 제13조(운영세칙) 사업단(팀)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단(팀)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**제14조(보칙)** 사업단(팀)장은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